

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

제 정 2009. 3.
개 정 2010. 6.
개 정 2012. 7.
개 정 2013. 1.
개 정 2014. 1.
개 정 2016. 2.
개 정 2016. 5.
개 정 2018. 6.
개 정 2021. 10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5장의 규정에 의거 전학,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편입학

제2조 (편입학 자격제한) 학칙 제19조에 의하여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중 전적교의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성적불량으로 유급되었던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.

제3조 (편입학생의 학점인정) ①삭제(개정 2014.01.14.)(개정 2018.06.29.)

②학부단위 평가위원회에서는 전적학교의 성적증명서를 개별 심사하여 전공 교과목 중 12학점 범위 내에서 선이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선이수 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은 해당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10.19.)

③편입학생의 학적부상의 성적기록은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만 기재한다.(개정 2018.06.29)

④삭제(개정 2018.06.29.)

⑤(신설2016.05.30.)(삭제 2021.10.19.)

⑥(신설2016.05.30.)(삭제 2021.10.19.)

제4조 (영어회화 교과목의 필수) <삭제>2012.7.1.

제5조 (현장실습) (삭제2016.05.30.)

제6조 (수강범위 및 방법) ①편입학생의 수강신청은 본교 수강신청관련 규정에 의한다.(개정2016.02.01.)

②(삭제2016.02.01.)

③(삭제2016.02.01.)

제3장 재입학

제7조 (자격) 재입학자의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8조 (절차)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기개시 10일 전까지 재입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(재입학허가) ①제출된 소정의 구비서류는 재입학 사정원칙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학과와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(개정2016.02.01.)

②재입학은 재입학 허가학년도를 기준으로 1~4학년 중 자퇴, 제적 등으로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된 총인원수를 제외하고 그 여석이 있을 경우 원적학부와 동일학부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.

③재입학 신청자수가 해당학부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학점 및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한다.

제10조 (학점인정) ①재입학 허가자의 학점인정은 해당학부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한하며, 학부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점인정표를 재입학 허가자에게 열람시키고 재입학생의 동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.

제11조 (등록)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제12조 (재입학 제한) ①학칙 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.

②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재입학을 제한한다.

제4장 기 타

제13조 (기타사항) 전학,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 본 규정 제11조 제1항의 변경사항은 201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며, 2012년 12월 이전 편입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 제1항)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